

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 삭제	P 수익증권 : 없음 KTB 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, KTB VIP 밸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90%이상 KTB VIP 밸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90%이상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모투자신탁 삭제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KTB 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, KTB VIP 밸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-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KTB VIP 밸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KTB 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삭제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모투자신탁 삭제	-	KTB 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투자전략 삭제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: 12.44%	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: 12.29%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가. 매입 나. 환매	클래스 신설 환매수수료 삭제	- <환매수수료> -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, 종류 Ci 수익증권, 종류 Cf 수익증권, 종류 Cw 수익증권 및 종류 S 수익증권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- 종류 Cp 수익증권 및 종류 S-P 수익증권 : 없음	(2) 종류별 가입자격 • 종류 CPe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<환매수수료>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, 종류 Ci 수익증권, 종류 Cf 수익증권, 종류 Cw 수익증권 및 종류 S 수익증권, 종류 Cp 수익증권 및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CPe 수익증권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기준일 현재 갱신 클래스 신설	- -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 • 종류 CPe - 판매수수료: 없음 - 환매수수료: 없음

	환매수수료 삭제	<p><환매수수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, 종류 Ci 수익증권, 종류 CF 수익증권, 종류 CW 수익증권 및 종류 S 수익증권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- 종류 CP 수익증권 및 종류 S-P 수익증권 :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신탁보수: 운용: 0.66% 판매: 0.23%, 기타: 0.07% - 투자기간별 예시 반영 수정(본문 참조) <p><환매수수료></p> <p>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, 종류 Ci 수익증권, 종류 CF 수익증권, 종류 CW 수익증권 및 종류 S 수익증권, 종류 CP 수익증권 및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CPe 수익증권: 없음</p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퇴직연금제도 세제 조항 추가	-	<p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 <p>①세액공제: (해당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</p> <p>②과세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</p> <p>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‘과세제도안내’ 참조</p> <p>※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2.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	모투자신탁 삭제에 따른 업무위탁현 황 업데이트	-	KTB 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 운용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내역 삭제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 공시 1.~9.<생략> <신설>	(2) 수시 공시 1.~9.<현행과 같음> 10.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 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라.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